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16686 손해배상(지)
원 고 A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계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이재준
변 론 종 결 2026. 5. 8.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6.부터 2026. 6.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품설계, 시스템 모니터링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D' (변경 전 컴퓨터프로그램명: E,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C는 2022. 10. 25.경 피고 회사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그때부터 2023. 4. 26.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 C와 피고 회사는 2024. 1. 8. 아래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고약2364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권법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원주시 F G 호에 있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0. 25.경부터 2023. 4. 26.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H 프로그램에 대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상에 게시된 불법 복제 버전을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 1대에 복제해 설치한 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피고 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 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가 위 불법행위로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공동하여¹⁾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처분권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 모듈의 사용료 중 일부로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 C가 복제한 모듈의 영구판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손해액은 87,749,000원이고, 기간제 라이선스 중 피고들이 로봇 설계를 위하여 사용할만한 패키지 가격과 추가 모듈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손해액은 189,01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6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여러 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용료도 개개의 모듈별로 또는 수개의 모듈이 합쳐진 패키지별로 책정



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로서 실제로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지는 모듈만을 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 사용료 역시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하였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실제 고객에게 판매될 때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별 구매 수량, 범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정품 가격에서 할인율이 적용되어 그 사용료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 모듈 사용료 가격의 단순 합산액이 곧바로 피고들이 그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산정방식에 의한 손해액(87,749,000원)은 1억 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산정방식에 의한 손해액(189,010,000원)은 실제 피고들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가격의 합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저작권법 제126조의 손해액 산정

1)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들의 업무 관련 정도, 개별 모듈의 구성 및 가격,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18,000,000원으로 정한다.

① 피고 C는 피고 회사 내 업무용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 H을 복제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성이 높아 보이고, 그 사용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짧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C가 불법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전체 모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듈 전부를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패키지에 포함된 일반 설계 모듈을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 C가 피고 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에서 매월 다수 개의 이 사건 프로그램 확장자 파일을 생성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위 파일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 모듈에서 사용하는 확장자 파일(*.prt, *.asm, *.drw)로 저장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는 다른 확장 모듈에 사용하는 확장자 파일은 저장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③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 5.0을 1년간 구독하는 경우 기본 설계 모듈인 'J' 사용료는 6,142,000원이고, 피고 C가



설치한 모듈 전부를 1년간 구독하는 경우 각 모듈 정가의 합산액은 352,995,000원이며, 로봇 설계를 위한 기본 설계 모듈인 'K' 사용료는 17,928,000원이다.

④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대체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오래된 버전의 사용료가 하락하게 되는데, 피고 C가 복제·사용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이 아니었다.

⑤ 피고들은 2023. 7. 4.경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스타트업 회사용 1년 사용권에 대한 견적가가 2,747,000원이었고,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1년 사용권 판매가도 5,273,000원 또는 9,300,000원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위 금액들을 넘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통 업체가 업체의 수요나 시장 상황 등 여러 이유로 프로그램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 판매가 또는 버전과 모듈을 달리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일회성 견적가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가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 일인 2023. 4. 2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2. 10. 25.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2023. 4. 26.까지의 불법행위를 포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이상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3. 4. 26.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30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